

## Lexmark 표준 구매 약관.

### 제1조: 개요

다음 구매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주문서 첫 페이지에 표시된 Lexmark 법인이 구매 주문을 받는 당사자(이하 “공급자”라 함)로부터 재화(이하 “재화”이라 함) 또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구매하기 위해 보내는 어떠한 주문에 대해 적용됩니다. 본 구매 주문은 참조에 의해 본 구매 주문에 통합된 일체의 문서와 함께 Lexmark와 공급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성립하며(이하 “주문”이라 함), 본 구매 주문의 제반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 사이에 있었던 이전 또는 현재의 어떠한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은 명시적으로 취소됩니다. 본 약관은 공급자의 판매 약관 또는 본 주문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발행하는 기타 일체의 문서를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주문 날짜 현재 당사자 쌍방 사이의 마스터 계약이 유효하고 본 주문의 재화/서비스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본 주문과 상충하는 어떠한 조건은 마스터 계약 내의 조건이 대체하여 적용됩니다. Lexmark는 공급자에게 “구매 주문 변경”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주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주문은 a) 재화/서비스 전달 또는 b) 공급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오(5)영업일 중 이른 시점에 공급자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2조: 납품

본 조건에 따른 재화/서비스의 납품에 있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급자는 본 주문에 명시된 날짜(이하 “납품 날짜”라 함)에 지정된 납품 장소에서 재화를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재화의 납품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정오) 및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달리 합의한 시점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본 주문에 따라 공급되는 일체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대해 적절히 라벨이 부착되는지와 해당 물질에 관한 적절한 정보(예: 물질 안전 데이터 시트)가 어떠한 연방, 주 및 지방 법규에 따라 Lexmark 측에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조: 원산지 국가

공급자는 납품되는 재화의 원산지 국가를 송장 및 납품 양식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Lexmark에 대해 납품되는 재화의 원산지 국가를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인해 Lexmark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과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제4조: 선적

어떠한 재화는 재화 및 운송 수단에 관한 산업 표준에 따라 포장되어야 합니다. 재화의 포장은 본 주문서의 첫 페이지에 기재된 일체의 지침을 반영하고, 수량 또는 총중량 및 순중량이 표시되고, 운송 및 환적에 관한 어떠한 현지 및 국제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화/서비스의 납품과 관련되거나 동봉되는 어떠한 문서에는 본 주문서의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송 경로는 본 주문서의 앞면에 기재된 운송 경로 지침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선불 운송 요금은 완납된 운임청구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통해 증빙되어야 합니다. 달리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급자는 도착 지점 인도 조건(DAP, Delivered at Point)으로 물품을 선적해야 합니다.

오직 Lexmark가 인정한 중량 및 수량만이 청구서 지불 목적으로 고려되고 확정됩니다. 납품 양식의 기재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책임입니다.

### 제5조: 소유권 이전

본 주문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한 선적 조건과 관계없이 재화의 소유권은 본 주문에 따라 재화가 납품되고 Lexmark가 승인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Lexmark에 인계되지 않습니다.

### 제6조: 검사

Lexmark는 납품 날짜 이후에 재화를 검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Lexmark가 판단하기에 재화에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Lexmark는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수를 거부하고 공급자의 위험 부담 하에 공급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검사, 승인 및/또는 결제는 재화가 수령되었거나 검사 권리 또는 기타 구제책에 대한 권리가 포기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제7조: 가격 책정

재화/서비스의 가격은 본 주문에 명시된 고정 가격으로 책정합니다(이하 “가격”이라 함). 달리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에는

어떠한 연방, 주 및 지방 세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판매세 및 사용세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한 Lexmark가 서면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 요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는 상자 포장 또는 기타 용기 포장, 운반, 보험 또는 운송(프리미엄 운송 포함)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된 계약이 없을 경우, 일체의 유효한 법률에 따라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부과금 및 기타 세금의 지불에 대하여 Lexmark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8조: 청구 및 결제**

송장은 (a) 주문 번호를 포함해야 하고, (b) 공급자가 주문에 표시된 Lexmark의 주소지로 전달해야 하며, (c) 재화/서비스의 납품일로부터 삼십(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이하 “정확한 송장”이라 함). 상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Lexmark에서는 해당 송장을 거부합니다. 공급자는 재화/서비스가 납품될 때까지 송장을 전달해서는 안 되며, Lexmark는 납품 날짜 전에 수령되는 일체의 송장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Lexmark는 본 주문에 명시된 조건/요율에 따라 공급자에게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Lexmark가 정확한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육십(60)일 후에 예산 배정 방식에 따라 정확한 송장에 대한 결제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Lexmark는 송장에 관한 일체의 분쟁 사항을 송장 기일 전에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Lexmark는 본 주문 또는 기타 거래에 따라 Lexmark가 수령해야 할 일체의 금액과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할 일체의 금액을 상계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제9조: Lexmark 소유의 재료**

Lexmark에서 제공하거나 대납하는 일체의 도구, 장비, 재료 또는 그 대체물 또는 그 첨부물 및/또는 문서는 Lexmark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공급자가 Lexmark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점유 중인 상기 재산은 (i) 공급자의 위험 부담 하에 보관되어야 하고(공급자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험 가입 책임을 짐), (ii) 언제든지 Lexmark가 회수할 수 있으며, (iii)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급자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수리되어야 합니다.

### **제10조: 기밀 유지**

공급자는 본 주문에 따라 Lexmark가 제공하는 어떠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하며, 일체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목적으로 그러한 정보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공급자가 Lexmark로부터 공개에 대한 서면 허가를 획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조항은 본 주문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Lexmark를 위해 생성하는 도면, 사양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제11조: 해지**

본 주문은 Lexmark가 공급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통지를 수령하는 대로 공급자는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취소된 작업과 관련된 범위까지의 어떠한 주문을 종료해야 합니다. Lexmark가 어떠한 이유로든 본 주문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은 해지 일자 전에 Lexmark가 수령하고 승인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받는 것입니다. Lexmark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비, 노무비 또는 예상 수익의 손실에 대하여 공급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2조: 보증**

공급자는 납품일로부터 십이(12)개월 동안 어떠한 재화/서비스가 (a) 신제품인 동시에 제조 기술, 재료 및 설계 측면에서 일체의 결함이 없고, (b) 본 주문 및 일체의 관련 사양에 부합하며, (c) 소기의 목적에 적합한 동시에 의도대로 작동하고, (d) 유치권, 선취 특권 또는 기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e) 제삼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본 주문에 따라 Lexmark에 대해 재화/서비스가 납품, 수행 및/또는 제공되는 국가의 어떠한 관련 반부패 및 뇌물 금지 법률을 준수함을 보증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일체의 납품, 검사, 승인 또는 결제 과정에 걸쳐 존속됩니다. 이러한 보증은 중복될 수 있으며 법률 또는 형평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보증에 부가됩니다. 일체의 관련 공소시효는 Lexmark가 부적합함을 알게 된 당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납품된 재화에 결함이 있거나 납품된 재화이 본 주문 및 일체의 관련 재화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Lexmark는 법률 또는 형평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구제책을 제한함이 없이 (i) 공급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본 주문 또는 관련 사양에 부합하는 재화의 납품을 요구하거나(이 경우 Lexmark는 결함 있는 재화를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반환해야 함), (ii) 구매 가격의 삭감을 요구하거나, (iii) 공급자에 대한 책임 없이 본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각 해지하거나, (iv) 서비스의 경우 Lexmark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의 단독 비용으로 서비스를 재차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책임 제한**

본 주문에 명시된 공급자의 면책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제외하고, Lexmark와 공급자는 손해의 유형에 관계없이 간접적, 특별,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해당 당사자가 통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 대해 Lexmark가 책임을 지는 금액의 총합은 본 주문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주문서의 어떠한 상충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본 주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Lexmark 또는 제삼자에 의해 Lexmark의 동산과 부동산 및 Lexmark의 직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재산 손해,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제14조: 면책**

공급자는 (a) 재화/서비스가 제삼자의 상표권, 영업 기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b) 그것이 본 주문에 따른 공급자의 행위 또는 누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다는 주장에 따라 재화/서비스 또는 본 주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실제적 및/또는 형의적 책임, 벌금, 클레임, 손실, 손해 및/또는 비용(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하 각각 “클레임”이라 함)에 대해 Lexmark, 그 계열사, 임원, 이사, 대행자, 하청계약자, 컨설턴트 및 직원을 보호, 면책 및 변호해야 합니다.

### **제15조: 보험**

공급자는 업계의 관행에 부합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최소한 공중책임, 제조물책임 및 완성 작업(최소 책임 한도: 손실 사건당 삼억(300,000,000)원), 완재화에 대한 재산보험, 고용주책임보험(법으로 요구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부보 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한 보험은 1차 보험이어야 하며 본 주문 또는 기타 사유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는 Lexmark의 요청이 있을 시 적절한 보험 부보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기 보험 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Lexmark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16조: 양도**

공급자는 본 주문을 제삼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또는 하청계약할 수 없으며, 그러한 양도 또는 이전 시도는 무효이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제17조: 홍보**

공급자는 본 주문의 존재 사실, Lexmark의 명칭, 영업표 또는 그 파생물 또는 Lexmark가 공급자의 고객이라는 정보를 Lexmark의 임원급 경영진 및 Lexmark의 Corporate Communications Department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일체의 홍보 활동 또는 자사의 웹 사이트 또는 일체의 공공 통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한 승인은 공급자가 상기 정보를 사용할 때마다 매 건별로 취득해야 합니다.

### **제18조: 일반 조항**

a) 본 주문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일체의 분쟁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동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일체의 법률 결정 조항이 배제됩니다. 당사자 쌍방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이 본 주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b) 공급자는 자신이 현재 어떠한 관련 법률, 규정 및 조례를 준수하고, 본 주문을 이행하는 동안 계속 준수할 것이며, 자신의 직원, 대행자,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이하 “인력”이라 함)가 어떠한 관련 법률, 규정 및 조례를 준수하도록 할 것임을 Lexmark에 대해 보증 및 표명합니다. 공급자는 본 주문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으로 요구되는 어떠한 라이선스, 허가, 권한, 승인 및 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인력은 최고의 산업 표준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공급자는 본 주문에 따른 재화의 판매에 수반되는 어떠한 국가의 어떠한 수출 및 수입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정부의 수입 및 수출 허가를 요하는 재화의 선적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급자가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Lexmark에 벌금이 부과될 경우, 공급자는 그와 관련된 벌금, 비용 및 경비를 대납하거나 Lexmark가 납부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합니다. 공급자의 인력이 Lexmark의 사업장 또는 자산에 접근해야 할 경우, 공급자는 해당 인력이 Lexmark의 정책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관련 건강, 안전 및 환경 정책 및 표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c) 공급자는 종류를 불문하고 선물 또는 사례금을 Lexmark의 직원, 계약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와 Lexmark는 독립적 계약자이며 상대방의 직원 또는 대행자가 아닙니다.

d) 본 주문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문의 조건을 포기하는 것은 일절 효력이 없습니다(포기하는 측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경우 제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본 주문에 포함된 일부 조건의 엄격한 이행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본 주문에 포함된 해당 조건이나 기타 조건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본 주문에 포함된 동일 조건이나 기타 조건을 이후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e) 본 주문에 따른 어떠한 통지는 배달 증명 우편(우편물 수령 증명 필요)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i) 국내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발송일로부터 오(5)일 후, (ii) 국제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발송일로부터 칠(7)일 후, 또는 (iii) 명망 있는 상업 속달 업체에 익일 배송 지시를 한 날로부터 이(2)일 후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a) 공급자에 대한 통지는 본 주문 첫 페이지의 주소로, b) Lexmark에 대한 통지는 아래의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Lexmark S.A. Korea Ltd.  
Attn: Global Sourcing Manager  
6F #106,147, Yanghwa-ro, Mapo-gu,  
Seoul, Korea  
(Zip. 03995)

렉스마크 에스에이 코리아  
글로벌 소싱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47(구. 동교동 160-4)  
아일렉스빌딩 위워크홀대 6층 106호  
(우) 03995

f) 본 주문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구제책은 중복적입니다. 즉, 당사자가 하나의 구제책을 지정하더라도 법률, 형평법 등에 따라 부여되는 다른 구제책을 구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본 주문의 어느 조항도 당사자 일방이 유효한 재판소 또는 형평법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즉각적 금지 명령 구제를 구할 권리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주문의 이행 불능이 해당 당사자의 합당한 통제력을 벗어난 원인에 기인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자신의 과오 또는 부주의가 없다면 어느 당사자도 본 주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본 주문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도 본 18조 (f)항에 의거하여 오(5)일을 초과하여 면책되는 경우, Lexmark는 서면 통지를 통해 공급자에 대한 책임 없이 본 주문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